

【 5 】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1. 4. 12.
제출자 : 양주군수

1. 제안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안 제5조).
- 다.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말한다.
2. “정보센터”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등으로 구성되어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기 운영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3.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보화 추진

제4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 정보화사업의 촉진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책임관은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정보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형태는 군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2.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3.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연구 및 용역사업 또는 전산처리 업무
4. 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및 교육활동
5. 정보화 학술연구 및 관련지원 활동
6.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①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군의회 의원,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업무관련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밸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관련시설의 도입 및 설치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